

『구미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』 검 토 보 고 서

1. 제 안 자 : 구미시장

2. 제안이유

- 주민편의와 행정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택지개발과 아파트 신축 등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과대·과소한 통·리·반을 분리 또는 통폐합하고자 본 조례를 일부 개정함

3. 주요내용

- 10개 통 증설(안 별표7, 별표14, 별표25)
 - 통·리 : 610개 통리(통 439, 리 171)
⇒ 620개 통리(통 448, 리 172)
 - 산동면 (증 1개리) : 공단조성 택지완료(봉산리→봉산1리, 봉산2리)
 - 전주원남동 (증 2개통) : 과밀통 분리 (49통, 50통)
 - 인동동 (증 7개통) : 과밀통 분리 (65통~69통),
영무예다음2차 신축(70통~71통)
- 48개 반 증설, 16개 반 폐지(안 별표7, 별표9, 별표14, 별표20, 별표24, 별표25)
 - 반 : 4,406개반 ⇒ 4,438개반 (32개반 증)
 - 산동면(증2, 감1) : 공단조성으로 택지개발 완료
 - 송정동(증3) : 송정 태왕아너스 신축
 - 전주원남동(증1) : 과밀통 분리
 - 인동동(증42, 감15) : 과밀통 분리, 영무예다음 2차 신축

4. 참고사항

- 「지방자치법」 제4조의2 제5항

5. 검토의견

○ 본 조례안은

- 주민편의와 행정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택지개발과 아파트 신축 등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과대·과소한 통·리·반을 분리 또는 통폐합하고자 본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써,

○ 주요 내용으로는

- 통리는 610개 통리에서 산동면 1개, 선주원남동 2개, 인동동 7개 통리의 증설로 620개 통리로 조정하였고,
- 반은 4,406개 반에서 48개 반 증설, 16개 반 폐지로 32개 반이 증가된 4,438개 반으로 조정하였음.

○ 검토결과

- 본 조례안은

택지개발과 아파트 신축 등으로 지역여건이 변화된 지역의 통반을 조정하여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고,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상위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다고 판단됨.